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자료제공/상공자원부 전력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대비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①(생략) ②법 제2조 제9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600V 이하의 전압과 75kW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 및 담, 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동일구내”라 한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p> <p>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것</p> <p>2.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u>전기설비</u> 가.~라. (생략)</p> <p>제5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가.~라. (현행과 같음)</p> <p>제5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을 두어야 할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별 기술인력과 자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기설비</th> <th>규 모</th> <th>기술인력</th> <th>자 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발전설비</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3">전기수용설비</td> <td>용량1만kW 이상</td> <td>전기분야 3명</td> <td>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td> </tr> <tr> <td>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td> <td>전기분야 2명</td> <td>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td> </tr> <tr> <td>용량5천kW 미만 -1천kW 이상</td> <td>전기분야 1명</td> <td>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td> </tr> </tbody> </table>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 격 기 준	발전설비	(생략)	(생략)	(생략)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생략)	(생략)	(생략)	전기수용설비	용량1만kW 이상	전기분야 3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	전기분야 2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용량5천kW 미만 -1천kW 이상	전기분야 1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p>③ </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기설비</th> <th>규 모</th> <th>기술인력</th> <th>자 격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발전설비</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3">전기수용설비</td> <td>용량1만kW 이상</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용량5천kW 미만 -2천kW 이상</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 격 기 준	발전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수용설비	용량1만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용량5천kW 미만 -2천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 격 기 준																																												
발전설비	(생략)	(생략)	(생략)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생략)	(생략)	(생략)																																												
전기수용설비	용량1만kW 이상	전기분야 3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	전기분야 2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용량5천kW 미만 -1천kW 이상	전기분야 1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이상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 격 기 준																																												
발전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수용설비	용량1만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용량1만kW 미만 -5천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용량5천kW 미만 -2천kW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별표 6】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기기(제46조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원자력 ·내연력 및 가스터빈 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년마다 2월 전후	1호 및 2호의 전기설비로서 사용 압력이 cm^2 당 0kg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및 발전기계통	1년마다 2월 전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기로서 용량 300kW 이하의 것은 3년마다 2월전후)	
나. 전기수용설비 고압이상 수전설비	(1) 병원·공연장·호텔·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예식장·지정문화재	2년마다 2월 전후	
	(2) 상가의외 수용가	3년마다 2월 전후	

개			
【별표 6】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기기(제46조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원자력· ·내연력 및 가스터빈 발전소(비사용 예비발전 설비 제외)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 포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 보일러 및 열교환기(다만, 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받는 것은 제외)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삭제)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 용예비발전 설비	(1) 병원·공연장·호텔·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예식장·지정문화재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현행과 같음)	
	(2) 상가의외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현행과 같음)	

【별표 11】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보고사항(제68조 관련)

1. 정기보고사항

보고서	서식	보고기한
1. 자가용발전설비 운전 실적 보고	별지 제65호 서식	다음해 1월 31일
2. 자가용발전설비 폐지보고	별지 제66호 서식	발생후 2일

【별지 제47호 서식】

(앞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5일
(기재내용 생략)	

【별표 11】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보고사항(제68조 관련)

1. 정기보고사항

보고서	서식	보고기한
1. (삭 제)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47호 서식】

(앞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3일
(현행과 같음)	

시행일 : 1993년 7월 30일